

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21년 6월 30일 규칙 제90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관광기념품”이란 「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기념품을 말한다.
2. “관광시설”이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또는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“판매점”이란 관광기념품의 판매를 위해서 시에서 지정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말한다.

제3조(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·운영)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효율적인 관광기념품 판매를 위해서 시의 행정재산 및 관광시설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판매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폐업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업(변경)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판매점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에 적합한 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점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판매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
⑤ 판매점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“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” 현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) ①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을 판매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정

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산일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.

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을 선납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월별 정산 후 청구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다.

제5조(관광기념품 보관 및 관리) ①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.

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판매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재고조사)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의 정확한 판매 및 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한 차례씩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광기념품의 폐기 및 교환) ① 시장은 보관, 이송, 전시 및 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는 등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관광기념품을 폐기할 수 있다.

② 판매점에 납품된 물품의 파손·훼손 등의 사유로 시에 교환을 요구할 시 10일 이내 물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위적 파손이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 따라 관광기념품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불용 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) 조례 제13조제2호의 관광명소는 별표와 같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관광명소(제8조 관련)

1. 드라마세트장
2. 어서오산 “휴(休)” 센터
3.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
4. 오산시 유엔(UN)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
5. 에코리움 및 맑음터공원 캠핑장
6.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

[별지 제3호서식]

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 약정서

오산시와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(이하 “판매점”이라 한다)은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(기본원칙) “오산시”와 “판매점”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,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조(내용) “오산시”는 오산시 관광기념품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신청인 _____ 을 “판매점”으로 지정 한다.

제3조(관광기념품 주문) “판매점”은 관광기념품 주문 시 “오산시”가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하도록 한다.

제4조(관광기념품 대금납부) “판매점”은 “오산시”에게 관광기념품 주문 시 관광기념품 대금을 “오산시”가 지정한 방법(지정계좌 입금)으로 납부한다.

제5조(관광기념품 교환 및 반환) ① 판매점은 납품된 물품의 파손·훼손 등의 사유로 “오산시”에 교환을 요구할 시, 관광기념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물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판매점의 부주의로 인한 인위적인 파손·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② 판매점의 지정이 취소 또는 해지되거나 개인 사정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가 불가할 경우에 납품 상태 그대로 관광기념품을 반환을 해야 한다.

③ 관광기념품의 반환은 해당 관광기념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되, 반납이 어렵거나 판매점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 있는 경우 현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6조(관광기념품 수령증) “판매점”은 “오산시”로부터 관광기념품을 납품 받았을 때에는 관광기념품 수령증(별지 제4호서식)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판매) ① “판매점”은 “오산시”가 정한 판매가격(소비자 가격)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② “판매점”은 “오산시”가 정한 판매가격(소비자 가격) 이하로 판매하려는 경우 “오산시”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고 등) “오산시”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기념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의 제출을 “판매점”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약정의 변경) 약정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제10조(약정기간) 본 약정은 쌍방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한쪽이 상대방 모두에게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하지 아니하면 약정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11조(약정 해지) ① 본 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“판매점”과 “오산시”와의 상호 간 협의에 의한다.

② “오산시”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의 판매점 지정을 중도 해 지 할 수 있다.

1. 판매점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
2. 오산시가 정한 판매가격 이상으로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경우
3. 판매점이 판매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판매점이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5. 사업자등록 취소를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폐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
5. 그 밖에 오산시가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2조(비밀유지) “오산시”와 “판매점”은 본 약정서 및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3조(약정서의 해석 등) 약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오산시”와 “판매점”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“오산시”의 해석에 따른다.

제14조(약정의 증명) 본 약정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약정서 2부를 작성·날인하여 “오산시”와 “판매점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지 정 인 : 오산시장 (인)

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)

신 청 인(판매점) :

대 표 자 :

사업자등록번호 :

소 재 지 :

[별지 제7호서식]

관광기념품 불용품 폐기조서

① 문서번호				
② 폐기장소				
③ 폐기일자	20 . . .			
집행자	④ 직위·직급		⑤ 성명	인
입회자	⑥ 직위·직급		⑦ 성명	인
⑧ 품명	⑨ 단위	⑩ 규격	⑪ 수량	⑫ 금액
⑬ 폐기방법				
⑭ 폐기사유				
⑮ 기타사항				